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6월 10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

임용 분야	임용예정 직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근무예정 부서	직무내용
금연 지도·단속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(주20시간)	1명	2년	건강 증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금연구역 관리</li><li>금연구역내 위반자 단속 및 계도,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li><li>금연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, 캠페인 실시</li><li>업무자료관리 및 활동계획 보고 등</li></ul>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

### 2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공무원임용령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

## ○ 공통요건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지역, 성별 :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## 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○ 임용요건

임용분야	임 용 자 격 기 준
금연 지도·단속	<p>○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야간 및 주말(공휴일) 단속이 가능한 자</li> <li>·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(출장업무를 위해 차량운전 필수)</li> <li>·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/ul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】</b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밖의 기관에서 금연·식품·교통·공중위생 환경·의학 등 <u>이와 유사한 분야의 지도·단속업무 경력</u></p> <p><b>【우대사항】</b> 금연자, 컴퓨터 활용(워드, 엑셀 등) 가능한 자</p>

- ※ **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**
- ※ **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함.**
- ※ **전임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 주 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**

## 4 보수기준
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**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20시간)	51,290천원 (주40시간기준)	<b>14,105천원</b>	(51,290천원×55%×20시간/40시간)

- ※ 마급(9급상당)의 경우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55%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- 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은 별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.

## 5

## 시험일정 및 방법



## ○ 시험일정

1차 서류전형	원서접수기간	·2024. 6. 24. (월) ~ 6. 26. (수) / 3일간
	서류합격자발표	·2024. 7. 1.(월) (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)
2차 면접전형	면접일시	·2024. 7. 5.(금) 예정 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 후 면접 실시
최종합격	합격자발표	·2024. 7. 12.(금) 예정 (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)
채용일자		·2024. 8. 1. (목) 예정 (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조화)

※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## ○ 시험방법

## &lt; 1차시험 : 서류전형 &gt;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
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**3배수** 이상인 때에는 우리 군이 정한  
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**3배수**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.
- 고득점자 중 **3배수**를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, 모두 합격 처리함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자격요건 미충족자 제외 후),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.

## &lt; 2차 면접시험 &gt; (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)
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50점 만점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## ※ 불합격 기준

-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,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함.(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. 미제출시 반영 불가)

※ 취업지원대상자(공고시작일 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  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※ 면접결과 공개: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**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**  
 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
○ **최종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**

-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**6 응시원서 접수**

- 접수기간 : **2024. 6. 24.(월) ~ 6. 26.(수) / 3일간** (점심시간 12:00~13:00시 제외)
- 접수처 : 달성군청 8층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(☎053-668-2234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
  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
- ※ **우편발송 후 담당자 전화(053-668-2234) 필수**(분실 및 접수누락 방지)
  - 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,  
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 앞 (우편번호 : 42974)

**7 제출서류**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	【별지서식 1】
② 응시원서 1부	【별지서식 2】
③ 이력서 1부 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<b>증빙자료</b> 필요 (없을 시 인정 불가)	【별지서식 3】
④ 자기소개서 1부	【별지서식 4】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	【별지서식 5】

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	【별지서식 6】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【별지서식 7】
⑧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도 포함)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	【별지서식 8】
⑨ 응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☞ 운전 면허 포함,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	
⑩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 -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, 근무기간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)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)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,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(별지서식 7) 추가 제출 - 기관(사업체)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- 전일근무 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<u>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:주20시간, 주35시간 근무)</u> - <u>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</u>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-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(※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)	【별지서식 9】
⑪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(경력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.경력기간 확인용)	
⑫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 1부 ☞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시 제출	
⑬ 경력사실확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 경력증명서 상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등이 기재가 안될 경우	【별지서식 10】
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【별지서식 11】
⑮ 응시수수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구입 (군청 2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가능) - 6~7급(나·다급): 7,000원 / 8~9급(라·마급): 5,000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	
⑯ 가점 사항과 관련된 서류 (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, 미제출 시 반영 불가) -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 해당자 -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3호, 제5호 해당자	
※ 상기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(집게)로 고정하여 제출 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	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	



- ◎ 응시요건 중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실시 예정 시작일 기준입니다.
- ◎ 채용분야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◎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(기준)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◎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허위사실 기재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◎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즉시 연락불가한 경우 미채용으로 채용종료)
- ◎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,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※ 본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함
- ◎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◎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출생지, 학교명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.
- ◎ 응시수수료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은 본인 희망 시 반환해드립니다.
- ◎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행 7일 전에 공고 및 개별통지합니다. (면접 관련 사항은 변경 즉시 개별통지)
- ◎ 채용절차·응시자격 관련 문의 :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(☎053.668.2234)  
직무관련문의

분 야	부 서	연 락 처
금연지도단속	보건소 건강증진과 질환관리팀	053-668-3112

## 직무기술서

직무군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-	금연지도단속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20시간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 달성군	보건소 건강증진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금연구역 관리</li> <li>◦ 금연구역 내 위반자 단속 및 계도</li> <li>◦ 과태료 부과 징수</li> <li>◦ 금연 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·캠페인 실시</li> <li>◦ 업무 자료관리 및 활동 계획 보고 등</li> </ul>
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</li> <li>◦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</li> <li>◦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</li> </ul>
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금연 지도 및 홍보를 위한 등 금연 관련 지식</li> </ul>
------	---

응시 자격 요건	<p>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li> <li>· 야간 및 주말(공휴일) 단속이 가능한 자</li> <li>·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(출장업무를 위해 차량운전 필수)</li> <li>·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/ul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】</b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밖의 기관에서 금연·식품·교통·공중위생·환경·의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의 <u>지도·단속업무 경력</u></p>
우대요건	금연자, 컴퓨터 활용(워드, 엑셀 등) 가능한 자